

관리번호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과제구분	완료여부
24	직원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계획 수립	완료

세부 지원내용		관련근거	일자	추진상황	비고
○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요 증가 시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재교육기관 정원(급당 20명) 초과시 일정범위내 전학 허용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혁신도시특별법 제28조	06.12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단서조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행정구역 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06.12.5 국무회의 의결)	
			06.3.14~ 07.1.11	○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 혁신도시특별법 공포(07.1.11)	
			07.11.9	□ '07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5,0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함.	
			08.11.12	□ '08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 시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운영비 16억원 지원 ○ 시도교육청에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협조 요청	
			09.7.6	□ '09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및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에 의거, 이전지역 관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가능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과정정책과				

관리번호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과제구분	완료여부
24	직원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계획 수립	완료

세부 지원내용	관련근거	일자	추진상황	비고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 '12.8 현재 10개 혁신도시에 영재학급 138개 기관, 영재교육원 23개 기관을 포함 총 161개 기관 운영중 ○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등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금 25억원 교부('13.5) ○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에 혁신도시 등 과소 설치지역에 신규기관 우선 배치 반영('13.10) ○ 혁신도시 내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등 시·도 교육청에 협조 요청(13.11.19, 영재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 시·도 교육청별 혁신도시 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추가 설치(예정) 계획 수요 조사('13.12) 	
		1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배정 및 전국 영재교육정책협의회 시, 혁신도시 내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공문 송부('15.11) ○ '16년도 혁신도시 영재교육기관 수요조사('16.5.1) ○ 혁신도시 시·군·구에 영재학교 및 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우선 설치 및 기존 권역에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학교 및 과학고(4개교, 46학급, 836명), 영재교육원(52개, 234학급, 3,484명), 영재학급(101개, 131학급, 2,434명) 등 총 학생수 6,754명('16.5.1기준) 	
		1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1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주재), 도시환경과장 7개 미이행 과제별 소관부처 및 국토부 관계자 - 내용 : 관할 교육감이 자율적 영재교육기관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